#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58

발의연월일: 2021. 7. 19.

발 의 자:최연숙・金炳旭・이태규

김형동 · 서정숙 · 박성준

이용호 • 권영세 • 김승수

권은희 • 류호정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은 대학 진학과 직업 교육을 받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보호대상아동이 취업 준비등으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있지만, 연장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2019년 기준 보호대상아동의 대학진학율은 37%, 취업율은 35. 7%, 소득수준은 월 평균 123만원에 그치고 있고, 위탁보호 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임대주택이나 전세자금 지원 등 주거지원을 받는 비율도 32.2%에 불과해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종료 이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 아동이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아동

의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자립지원의 내용을 임대주택의 공급, 자립정착금 지원, 교육훈련 또는 교육비 지급,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3호, 제37조의2 및 제38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5년 이내의 범 위에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7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1.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 2.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자립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

원체계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 4. 자립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5.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 6. 자립지원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를 "제37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기본계획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임대주택의 공급 등 주거지원"으로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급 등 생활지원
- 1의3. 자립에 필요한 교육훈련 또는 교육비 지급 등의 교육지원
- 1의4. 자립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

##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 ③ (생 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 ④ ------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 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사 <신 설> 유로 보호대상아동이 5년 이 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 을 요청하는 경우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보호대상아동 자립지 원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 장 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7조의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

- 하여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기본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 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 2.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자립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 심의 지원체계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 4. 자립지원을 위한 조사 · 연구 ·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5.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 6. 자립지원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 제38조(자립지원) ① -----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

-----제37조의2에 따른

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 1. -----임대주택의 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신 설>

<신 설>

<신 설>

2. ~ 5. (생략) ② (생략)

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 자립지원기본계획에 따라-----

- 공급 등 주거지원
-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 금 지급 등 생활지원
- 1의3. 자립에 필요한 교육훈련 또는 교육비 지급 등 교육지 원
- 1의4. 자립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알선 등 취업지 <u>원</u>
- 2. ~ 5.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